

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3. 11. 21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농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하도록 명시
- 운영관리위원회가 농촌 실정에 밝은 농업인에 의해 설치·운영 될 수 있는 근거 마련

2. 수정 주요골자

- 조례(안)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항 2호 “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,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” 에서 “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,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” 로 하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농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하도록 명시

수정조문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1조~제9조(생략)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한다. 1. (생략). 2.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,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 3. (생략) ② (생략) 제11조~제21조(생략) 부칙 (생략)	제1조~제9조(제정안과 같음)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----- -----. 1. (제정안과 같음). 2.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,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3. (제정안과 같음) ② (제정안과 같음) 제11조~제21조(제정안과 같음) 부칙(제정안과 같음)

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의 개발·이용·보전·관리에 대한 운영 기준을 규정 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.

제2조(농촌용수구역) ① “농촌용수구역”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.

② “농촌용수”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, 농업용수, 공업용수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(지표수 및 지하수)를 말한다.

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.

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
2.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
3.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
4.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
5. 농촌용수시설의 관리
6.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, 학술단체,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)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(농촌용수계획 수립)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, 농촌용수 공급,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·관리 방안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.

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·보완 할 수 있다.

제6조(농촌용수의 오염방지)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, 정기적 수질검사, 오염관측망 설치운영, 오염유발시설의 개선·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.

제7조(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)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·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
2.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

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·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 실태 조사를 포함 하여 관리한다.

제8조(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)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

1. 용수구역 : ○○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(이하“운영관리위원회”라 한다)
2. 시 관할 구역 : 농촌용수구역 구미시위원회(이하 “시위원회”라 한다)

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운영관리위원회 :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,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
가.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
나.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
다. 농촌용수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
라.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
마.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
2. 시위원회 :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·취합, 시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,관리,보전 계획수립추진,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한다.

1.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,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3.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,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.

②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한다.

1.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다.
3. 시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.
4.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과장으로 서기는 농지담당으로 한다.

5. 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직기간으로 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.

1. 운영관리위원회 : 년 2회

2. 시위원회 : 년 1회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회의록)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심의 조정사항의 준수)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운영규칙)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(목적외 용수의 개발사용) ①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것
2.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
3.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
4.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

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9조(사용제한 등의 공고)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, 기간, 구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20조(용수구역의 관리협약)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 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